

보안과제 관리지침

[제정 2014. 5.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보안규칙」에 따른 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업의 보안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진흥원 임직원
2. 사업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3. 사업의 기획, 신규·중간·최종·성과활용 평가 등을 위한 위원회 참여자
4. 기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2장 사업보안관리 체계

제4조(연구보안심의회) ①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주요조직 부서장(이하, “사업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하부조직의 장 및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과제의 보안등급 분류에 관한 적정성은 평가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보안등급 분류

제5조(보안등급 분류기준) ① 진흥원 사업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I·II·III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I·II·III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업부서장은 보안등급 분류시 사업 또는 과제 기획단계에서 보안등급이 분류될 경우에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등급 분류절차) 사업부서장은 과제의 선정평가지 <별표 제1호>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될 경우, 이를 토대로 연구보안심의회에서 보안등급을 최종 결정한다.

제7조(보안등급 변경) ① 사업부서장은 수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보완 등급의 변경 사항에 대한 신청을 접수 받은 후, 연구보안심의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보안을 위한 조치

제8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사업부서장은 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보안과제의 경우 보안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안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9조(보안과제 관리 및 조치) ① 보안과제결과보고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결과보고서의 평가·관리상 필요하다고 사업부서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사업부서장은 보안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여한 자에게 <별표 제6호>의 서식을 활용하여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장은 보안과제 사업수행자에게 <별표 제7호>의 서식을 활용하여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별표 제4호 및 제5호>의 서식을 활용하여 보안과제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실 자료 보안조치) 사업부서장은 선정·평가·관리를 위해 사업별 위원회 개최 시 사업의 보안을 위하여 회의실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업별 위원회 개최 시 사용된 각종 계획서 및 보고서는 진흥원 「보안규칙」 제31조(비밀의 파기)에 따라 전량 회수하거나, 파기·보관 하여야 한다.
2. 회의실 사용 중 식사 등으로 인한 휴식 및 종료 후에는 회의실 잠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관리 교육) 사업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지도감사 및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보안관리 현황보고 등

제12조(보안관리 현황보고)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보안관리 현황을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보안관리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실태점검 등) ① 사업부서장은 과제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보안실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보안점검, 보안감사, 보안사고, 보안사고의 처리 등은 진흥원 「보안규칙」 제

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르되,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8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① 진흥원, 수행기관의 장, 과제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등은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보안관리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통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사업 선정 또는 평가의 참여 제한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2014. 5.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진행 중인 과제는 협약이 갱신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1호>

수행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 수행과제는 「보안과제」 또는 「일반과제」로 구분합니다.
- 보안관리요령 제9조의 보안등급 분류기준에 의거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제12조제2항 및 수행기관의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합니다.

번호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수행과제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행과제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술 ○ 참고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12-13호(2012.1.30)		
4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5	(기타 수행기관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항목 추가 가능)		

최종 확인 결과 : 보안과제 일반과제

※ 상기 검토 결과,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 과제로 분류

본인은 위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심사자)

(성명)

(인)

연구보안심의회 귀중

<별표 제2호>

사업계획서 (예시1)

관리번호	공란	Version	Ver 1.00
① 사업구분			
② 기술분야	(한글 80자 이내)	③ 기술분류코드	9999
④ 과제명	(국문) (한글 80자 이내)		
	(영문) (영문 160자 이내)		
⑤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한글 25자 이내)	⑥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우편번호)	번지 (000-000)(한글 100자 이내)	
⑦ 연구책임자	소속 및 부서	(한글 25자 이내)	직위 (한글 25자이내)
	성명(한문)	(한글 10자이내)	성명(영문) (영문 50자이내)
	E-mail	(50자 이내)	생년월일
	전화번호(이동전화)	042-000-0000(000-0000-0000)	FAX
⑧ 실무책임자	성명	(한글 10자이내) 전화번호	000-0000-0000 E-mail (50자 이내)
⑨ 총연구기간	2000년 00월 00일 부터 2000년 00월 00일 까지 (00년 00월)		
⑩ 당해년도연구기간	2000년 00월 00일 부터 2000년 00월 00일 까지 (12개월) (1차년도)		
연구 개발 비	⑪ 총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천원
		연구기관부담금	천원
		계	천원
		⑫ 당해년도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천원
			연구기관부담금 천원
			계 천원
⑬ 참여인력(M/Y)	총 : 명(M/Y) 당해연도 : 명(M/Y)		
⑭ 공동과제	공동 과제명	참여연구기관	공동연구책임자
⑮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과제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0000 년 00월 00일			
주 관 기 관 장 : 홍길동 (직인)			
총 괄 책 임 자 : 홍길동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작성될 내용은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므로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무 담당자는 관리부(팀)원 중 본 과제를 종합 관리하는 사람을 선임 요망(참여연구원도 가능)

<별표 제3호>

○○사업 신규과제 종합평가의견서 (예시2)

과제번호		평가일	20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위탁기관			
평가 점수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 점		
보안 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종합평가의견	<p>< 선정 또는 탈락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 경합과제시 선정된 경우에는 비교 우위를 명확히 제시 > < 기술료 비징수 과제일 경우 타당성을 명확히 기재 ></p>		
작성자	평가 위원 : (인)		
확인자	평가위원장 : (인)		

<별표 제4호>

보안과제 현황관리 (예시)

과제정보

사업명		사업연도	
과제명		과제번호	
기관명(주관)		총괄책임자	
보안등급	<input type="checkbox"/> 보안과제 <input type="checkbox"/> 일반과제		

외국기관 참여현황

구분	기관명	위탁/공동 과제명	수행기간	사업비 (단위 : 천원)	비고

외국인 참여현황

구분	성명	참여형태	국적	외국인번호 등 (관리번호)	참여과제명	비고

※ 구분란 : 주관기관, 공동기관, 위탁기관 등, 참여형태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 외국인 참여의 경우 외국인 신상카드(붙임 1)을 작성하여 관리

외국인 접촉 현황

참여연구원	외국인 (접촉대상/국적)	접촉일	접촉사유

외부기관 파견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파견기관	파견기간	파견사유	신원조회여부 및 결과

핵심인력 현황

성명	생년월일	핵심인력 분류사유	비고

연구개발결과물 외부제공 현황

결과물	배포처	배포부수	배포일	비고

※ 보안과제 현황관리 양식이나, 일반과제의 경우에도 현황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본 양식을 활용하여 관리

<별표 제5호>

보안과제 총괄 현황(예시)

	사업명	세부 과제명	주관기관명	총괄 책임자	과제 시작일	과제 종료일	보안과제 지정일자	보안과제 지정사유
1								
2								
3								
4								
5								

※ 보안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만 기재(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과제도 포함)

<별표 제6호>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예시)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
○○ 사업의 평가위원으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2조 및 제44조에 의거
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다음의 연구개발 기밀에 대해 평가 중은 물론 평
가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
지 않는다.
 - 가. 과제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과제명,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실적, 연구장비 및 시설에 관한 사항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개인 이력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 영업비밀등과 관련되는 사항
 - 나. 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회의록 등 평가결과 전반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비밀을 요하는 사항

2. 본 과제의 수행계획 및 조사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
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의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약한다.
 - 가. 평가대상기관(기업)의 임직원, 사외이사 및 고문 등 신분상의 이해관계
 - 나. 평가대상기관(기업)의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보유 등 재산상의 이해관계
 - 다.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와 사제관계(최종학위교수 및 학생관계) 또는 친족관계 (8
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라. 계열사 소속 직원

4. 본 과제의 평가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2조에 따라
평가위원 명단 및 종합평가의견 등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한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위원 자격 박탈 및 산업기술혁신사업에의 참
여제한 등의 제재와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 명 : (인)

20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별표 제7호-1>

보안서약서(수행기관용) (예시1)

본인은 “_____”과제 개발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개발 기밀에 대해 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수행기관장 또는 전담기관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 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과제가 완료되거나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총괄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및 제 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퇴직시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 비밀 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명 : (인)

20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별표 제7호-2>

보안서약서(전담기관용) (예시2)

본인은 산업기술혁신사업(세부사업 :) 보안과제 담당자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2조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과제의 선정단계부터 수행관리, 과제종료 이후의 성과관리 등 사업관리 전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한 사항에 대해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보안과제의 성과 등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보안과제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즉시 인계절차를 이행하며, 제1항 및 제 2항에서와 같이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퇴직시 본인은 보안과제 담당자로서 취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징계와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인 소속 :
성명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